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제3자 대리인 규칙

목 차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규칙의 적용)
- 제 3 조 (타 규정 또는 규칙과의 관계)
-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제 3 자 대리인에 대한 실사

- 제 5 조 (제 3 자 대리인에 대한 실사)

제 3 장 반부패를 위한 실행조치

- 제 6 조 (제 3 자 대리인과의 계약)
- 제 7 조 (제 3 자 대리인에 대한 점검)
- 제 8 조 (문서보관 및 감사)
- 제 9 조 (교육)

제 4 장 신고 및 처벌

- 제 10 조 (보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 제 11 조 (처벌 및 인센티브)

부 칙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제3자 대리인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제3자 대리인 규칙(이하 “규칙” 이라고 함)은 해외부패방지법준수를 위한 규정(이하 “해외부패방지규정” 이라고 함) 제10조에 의거하여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식회사(이하 “회사” 라고 함), 자회사, 해외지사 또는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이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제3자 대리인과 비즈니스(Business)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칙의 적용) ① 이 규칙은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단기, 상시, 정기 또는 임시 여부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임직원” 이라 함)에게 적용된다.

②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의 일부 또는 부분적 적용이나 배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별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가 부패방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전 승인을 준 경우에 한하여, 이 규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3조 (타 규정 또는 규칙과의 관계) ① 이 규칙과 해외부패방지규정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 또는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 이 규칙과 회사 내 다른 규정 또는 규칙간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③ 제3자 대리인이면서 합작투자 파트너인 경우에는 이 규칙뿐 만 아니라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합작투자 규칙도 함께 적용을 받는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타 이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해외부패방지규정의 정의에 의한다.

1. “**계약 관계에 있는 제3자 대리인**” 는 회사, 자회사, 해외 지사,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이 계약을 체결한 제3자 대리인으로서,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제3자 대리인**” 은 회사, 자회사, 해외지사,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의 대정부 업무 (인가, 허가, 정부 승인 취득 등) 또는 사업의 개발, 수주, 수행 또는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거나 담당하도록 하는 에이전트(Agent), 컨설턴트(Consultant), 전문가 또는 소매업자를 말한다. 특정 사업에서 지분투자, 설계, 조달, 시공 또는/및 운영에 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도 받아 수행하지 않는 협력업체나 개발 또는 투자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지 않는 파트너의 경우, 주관부서의 판단에 따라 해당 협력업체 또는 파트너를 제3자 대리인으로 간주하여 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3. “컨소시엄”은 회사의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합작투자 규칙의 적용을 받는 컨소시엄을 말한다.
4. “파트너”는 회사의 현재 또는 미래의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 파트너를 말한다.
5. “합작투자”는 회사의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합작투자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합작투자를 말한다.

제 2 장 제3자 대리인에 대한 실사

제5조 (제3자 대리인에 대한 실사) ① 제3자 대리인과의 계약 체결 등 거래에 관여하거나 제3자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등 제3자 대리인과 빈번하게 또는 정기적으로 접촉을 하는 모든 임직원 (이하 “제3자 대리인 담당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 자회사, 해외 지사,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이 제3자 대리인과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사를 수행한다. 단,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파트너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따른 제3자 대리인에 대한 실사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 지사가 제3자 대리인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 또는 사업기회에 대한 정보
 - 나. 제3자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 및 필요성
 - 다. 제3자 대리인이 시장가격에 따라 적법하고 적절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능력, 경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라. 제3자 대리인의 설립지, 사무소 소재지, 주주 또는 소유자, 주요 경영진 및 회사, 자회사, 해외지사,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임직원
 - 마. 제3자 대리인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하였거나 위반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평판 또는 명성
 - 바. 공무원이 제3자 대리인에 대한 법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
- ② 제3자 대리인 담당 임직원은 실사 수행 과정에서 제3자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3자 대리인에 대한 질문서를(별지 제1호 서식, Questionnaire for Consultants)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질문서를 주관부서에 송부하여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주관부서가 제3자 대리인이 작성이 완료된 질문서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3자 대리인에 대한 심화된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본 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후, 제3자 대리인 담당 임직원은 제3자 대리인으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Compliance,)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제3자 대리인 담당 임직원은 매년 1월에 계약 관계에 있는 제3자 대리인으로부터 기 제출한 질문서에서 답변한 내용 또는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서약서에서 확약/보증한 내용 중 변경된 정보나 위반 또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갱신

된 질문서와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서약서를 주관부서에 송부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⑤ 제3자 대리인 담당 임직원은 제3자 대리인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제3자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제3자 대리인이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가. 제3자 대리인이 공무원에게 유가물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거나 정황상 유가물 지급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경우
 - 나. 공무원이 제3자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추천한 경우
 - 다. 제3자 대리인이 공무원과 가족 또는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 라. 제3자 대리인이 제공하려는 용역이 이전에 종사한 사업범위와 다른 경우
 - 마. 제공하는 용역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 바. 출처가 의심되거나 부실 기재된 비용 청구를 하는 경우
 - 사. 비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제3자를 경유한 지급, 제3국에서의 지급 등)
 - 아. 제3자 대리인이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서약서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 자. 제3자 대리인의 비용 및 회계기록의 투명성이 결여된 경우
 - 차. 제3자 대리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주주 또는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 3 장 반부패를 위한 기타 실행조치

제6조 (제3자 대리인과의 계약) ① 제3자 대리인 담당 임직원은 제3자 대리인과 계약 조건을 협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자 대리인의 보수 금액 및 지급조건은 (i) 관련 사업의 규모와 복잡성, (ii) 관련 사업 수행지의 법규, 관습 또는 관행, (iii) 비즈니스 관행 및 (iv)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범위와 내용 및 (v) 동등한 용역에 대한 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어야 한다.
 2. 제3자 대리인에게 해외반부패규정과 이 규칙을 제공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해외반부패규정과 이 규칙의 적용을 받을 것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3자 대리인이 해외반부패규정과 이 규칙의 적용을 받기로 합의한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서약서에 기록한다.
 3. 제3자 대리인과 협의가 완료된 계약서는 (제3자 대리인과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체결 전 주관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② 회사, 자회사, 해외지사 또는 회사가 참여하는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이 제3자 대리인과 체결하는 서면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본 조 4호와 5호는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 불가피하게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단, 회사가 참여하는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파트너

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따른 준법조항을 제3자 대리인과의 계약이 규정할 수도 있다.

1. 제3자 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즉, 용역의 범위, 기간 또는 횟수 등)
 2. 보수 금액 및 지급 조건
 3. 보수 지급 방법 관련, 제3자 대리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에 개설된 제3자 대리인 명의의 은행 계좌
 4. 제3자 대리인, 제3자 대리인의 임직원, 자회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 주주 또는 소유자 또는 제3자 대리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는 제3자(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해외부패방지법 준수와 관련된 의무 및 책임
 5. 회사, 자회사, 해외지사,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의 계약 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감사권
- ③ 주관부서는 제3항에 열거된 사항 이외에 제3자 대리인의 해외부패방지법 준수의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것을 제3자 대리인 담당 임직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제3자 대리인에 대한 점검) 제3자 대리인 담당 임직원은 제3자 대리인이 계약서상 부패행위금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 또는 확인하여야 하며, 제3자 대리인이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문서보관 및 감사) ① 제3자 대리인과 관련된 거래 및 회사의 자금 지출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문서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회사의 관련 사규에 따른다.

- ② 제3자 대리인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감사는 내부감사규정 등 회사의 관련 사규에 따른다.

제9조 (교육) ① 주관부서는 제3자 대리인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 대리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내용은 해외부패방지법,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규정 및 규칙의 주요사항, 업무 수행상 유의사항 및 유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 ③ 교육 실시 후 교육참가서를 사용하여 강사, 교육내용, 교육자료, 일시 및 장소, 교육참가자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고, 교육참가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신고 및 처벌

제10조 (보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① 임직원은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이 규칙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자신의 상급자, 주관부서 또

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에 반드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본 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대신 주관부서에 익명 보장을 조건으로 보고할 수도 있으며, 주관부서 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는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이 규칙의 위반 사실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을 보고한 임직원을 상대로 고용관계 또는 기타 어떠한 면에서도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처벌 및 인센티브) ①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상벌규칙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 ② 주관부서는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이 규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되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건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 및 포상에 대해서는 상벌규칙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칙은 2022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